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박수민·김선교·박성민

이헌승 · 서지영 · 강승규

박준태 · 성일종 · 권성동

이종욱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"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"을 "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	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	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	<u>.</u>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<u>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</u>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에 따른 어린이집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

2. · 3. (생략)

④ ~ ① (생 략)

,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
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
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
한 교육비와 초등학교 취
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
을 위하여
<u>로 미의 I</u>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